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2020. 3. 25. 제정

2020. 12. 1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 재해 관련 전문성을 선도하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 연구를 수행한다.
2. 초중등 학생 및 시민들의 해저드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연구를 수행한다.
3. 재난 재해가 갖는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활발한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4. 해저드 리터러시 관련 미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제4조(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자연 재해 연구팀, 인공 재해 연구팀, 해저드 리터러시 교육 연구팀 및 행정팀을 둔다.

② 자연 재해 연구팀은 태풍, 지진, 지반 침하, 생명 다양성 감소 등에 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연구를 담당한다.

③ 인공 재해 연구팀은 미세먼지, 대기 오염, 지구온난화, 동식물 전염병, 핵 폐기물 등에 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연구를 담당한다.

④ 해저드 리터러시 교육 연구팀은 초중등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해 재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및 홍보 관련 연구를 담당한다.

⑤ 행정팀은 연구소 사무 회계와 기타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팀장) ① 행정팀을 제외한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② 각 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범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범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2조(경비 및 현금 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자체 연구비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 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부칙(2020. 3. 25. 제정)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